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
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난의 복잡·대형화 등에 따른 소방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
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충청북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장 직
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고, 인천 지역의 소방공무원
교육훈련과 민·관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인천소방학교의 학교장 정원
(소방정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13. ~ 3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소방공무원 계 “65,885”를 “65,886”으로 하고, 소방감 “6”을 “10”으로, 소방준감 이하 “65,876”을 “65,873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시·도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정원표(제2조제3항 관련)

1. 소방본부장

시·도 별 계급별	합계	서울 특별 시	부산 광역 시	대구 광역 시	인천 광역 시	광주 광역 시	대전 광역 시	울산 광역 시	세종 특별 자치 시	경기 도	강원 특별 자치 도	충청 북도	충청 남도	전북 특별 자치 도	전라 남도	경상 북도	경상 남도	제주 특별 자치 도
총계	18	1	1	1	1	1	1	1	1	2	1	1	1	1	1	1	1	1
소방정감	3	1	1							1								
소방감	10			1	1			1			1	1	1	1	1	1	1	
소방준감	5					1	1		1	1								1

2. 지방소방학교장

시·도 별 계급별	합계	서울 특별 시	부산 광역 시	대구 광역 시	인천 광역 시	광주 광역 시	대전 광역 시	울산 광역 시	세종 특별 자치 시	경기 도	강원 특별 자치 도	충청 북도	충청 남도	전북 특별 자치 도	전라 남도	경상 북도	경상 남도	제주 특별 자치 도
총계	8	1	1		1	1				1	1		1			1		
소방준감	2	1								1								
소방정	6		1		1	1					1		1			1		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시 · 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소방공무원 계	<u>65,885</u>	<u>65,886</u>	+1
·	·	·	
소방감	<u>6</u>	<u>10</u>	+4
소방준감 이하	<u>65,876</u>	<u>65,873</u>	-3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90